

가 ...

가

가

1.

...

“

”

“

(

2)”

(

)

“

...

가

,

~

가,

,

...

...

가

,

,

(PCT : Patent

Cooperation Treaty)가

가

,

3

가

(

)

가

,

...

...

14

(

3

: 1327~1377)

(letters patent)

.

...

...

가...

,

.

가

...

. 17

가

,

1791 ,

1790 ,

1877

가 . (16

가)

가

SGML

1882

(時務疏 :

가

)

. 1908

2

, 가

가

2.

, 가

...

()

(, , () ,)

1 6

가

가

5

. (

.)

. ((?) . “ ; The laws aid the vigilant, not the negligent”)

가 ()

가 , , 가
(4 .)

3 () 가
()
(Patent Map)

가 가
Stanford DNA
60%
Monoclonal antibody
가 50

3.

가 ...
가 ?

“ ”

,

. (

.)

□ 특허법 제 30 조(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)

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 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 2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
1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 2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 2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
3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 2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가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
 - 나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
 - 다.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
 - 라. 조약의 당사국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

②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 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6

1

...

...

(

..)

가

가

. 96

4

(, , ,)

()

가

.) 1 (grace period .

.		6
.		6
.		1
.		6

< : <http://www.kipo.go.kr> >